창간 63 주년 기념 축사

『考試界』의 재도약을 기원한다

『考試界』의 창간 63주년을 축하하고, 굴곡의 역사속에서 고시잡지의 맥을 이어온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1956년의 척박한 환경에서 창립되어 고시세계의 중심축을 이루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시의 변천과 고시잡지의 부침속에서도 63년 성상을 감내한 『考試界』의 저력에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학술지가 많지 않던 과거 『考試界』는 수험잡지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필자도 1990년 8월 1일자 『考試界』에 '現行 行政上 損害塡補制度의 欠缺과 補充'이라는 학술논문을 게재하였었다. 이 시대에 『考試界』는 고시계뿐만 아니라 법학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행정고시에서 법학과목이 중심을 이루고, 사법시험이 건재하던 시대에 『考試界』는 베스트셀러로서의 영화를 누렸다. 행정고시에서 법학과목이 줄어들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考試界』는 출판사업과 법률교육사업도 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잘 보내고 있다. 고시환경이 『考試界』에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考試界』는 이러한 도전에 잘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수험법학의 중심이 되어 왔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폭풍한설을 뚫고 전진하는 『考試界』의 저력에 경의를 표하고 찬사를 보낸다.

고시는 인류가 창안한 가장 공정한 인재선발의 방식이다. 고시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시험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고시의 존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시는 특권층에 경도되고, 부패와 불합리로 점철된 음서제를 대체하면서 탄생한 전문성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하는 인재의 등용문이다. 이러한 고시의 가치는 지금도 유지되어야 한다. 동양의 고시제도가 서양으로 전파되어 서양의 관료제를 꽃피우고, 서양의 관료제는 동양으로 수입되어 동양에 근대 공무원제도를 정착시켰다. 오늘날 고시와 관료제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고시와 관료제가 악의 축으로까지 혹평을 받기도 하지만, 실력있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한다는 고시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고시는 인류의 유산이고 자산이다. 문제는 고시의 과목과 고시의 방식에 있다.

공직자의 전문성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정책의 수립이나 정책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정책성과가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공직자의 전문성과 공직의식의 결여 내지 미흡이다. 특히 공직자의 법전문성과 기술전문성 그리고 사명감이 크게 부족하다.

정책의 수립이 정치학자나 행정학자에 의해 주도되고 법전문가가 정책의 수립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정책의 수

박 균 성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립시 정책의 방향만 제시되고, 정책의 입법화나 정책의 집행에 관한 세밀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몰고 올 부작용 및 이해관계의 대립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전문가가 정책 수립에서 배제되다 보니 그러한 배려 없이 일단 정책을 실시하고, 제기되는 문제는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한 미숙한 정책수립으로 이해집단의 분노와 반발을 유발한 후 그것을 수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정책 집행 자체가 포기되거나 어쩔 수 없이 축소·변형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최저임금인상정책, 근로시간제한정책이나 차량공유정책의 예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맞추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원칙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지만, 급속한 인상 또는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반발이나 버스파업 결의, 이에 따른 버스요금 인상이라는 혼란 등이 야기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인 차량공유정책은 택시업계의 이유있는 반발로 제한된 카풀제의 시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책 수립시 정책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할 정책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의 조정수단인 법을 정책집행을 위한 도구로 보는 잘못된 사고를 버리고, 정책 수립시부터 법적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입법과 법집행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법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법지식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데, 전혀 법을 공부하지 않고도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 현행 9급공무원시험제도이다. 행정고시 출신을 포함하여 공무원 대부분의 법지식이 매우 낮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시험과목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경찰공무원시험에서 형사법(형법과 형사소송법), 헌법과 행정법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경찰의 공권력은 국가권력 중 가장 강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법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수년 내

에 9급공무원시험에도 행정법 등 일부 법학과목을 필수과목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다. 지방공무원시험에서는 지방자치법을 필수과목으로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사명감이 있어야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이해집단의 로비에 포획되지 않고, 정권이나 이해집단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공직윤리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공직윤리과목에는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공무원채용시험뿐만 아니라 국가운영이나 기업운영 전반에서 법이 경시된 것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기도 하였지만, 법전문가의 문제해결능력의 미흡이나 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자인해야 한다. 그 동안 법전문가는 국가지도자나 기업운영자가 추진하려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대안의 제시없이 법적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국가지도자나 기업운영자는 법전문가를 좋아 하지 않았다. 법전문가는 법적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는 항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전문가가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시대적 소명이 법치를 요구하고 법전문가의 활약을 요구하고 있다. 법전문가가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에서의 수요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4차산업혁명의 물결은 법학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법학의 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법이론과 실무의 통합을 이루고, 법학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융합법학도 발전시켜야 한다. 헌법과 행정법을 융합한 공법, 형법과 형사법을 융합한 형사법, 민법, 민사소송법과 상법을 융합한 상사법뿐만 아니라 공법과 사법의 융합, 공법과 형사법의 융합 등 법학간의 융합 그리고 법학과 인접학문의 융합을 통해 법정책학, 법경제학, 기술법학 등의 융합법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화와 선진국가 진입으로 국가나 기업이나 법치를 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법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핵심요소인 공정경쟁의 룰이자 플랫폼인 법이 제대로 서지 않고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이제 법이 국가와 기업의 운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법학의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있다. 법치는 여야 간의 정파적 대립을 합리적 정책 대결로 유도할 수 있고, 기업의 국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법치주의가 실제로 실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법지식 및 법감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법을 잘 알아야 소신을 갖고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 공무원의 법지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 채용시험과목에서 법과목을 확대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은 『考試界』의 재도약을 요구한다. 63년의 전통 그 자체로도 경이로운 일이지만, 『考試界』가 100년, 나아가 200년의 전통을 쌓아올리기를 기원한다. 고시한류를 만들기 위해 건설적 고시정책을 제안하고, 고시정보를 소통하고, 수험법학을 발전시켜 한국고시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